

●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-39호

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12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- 근 거 법 령 :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
- 법 위반 사항: 전파사용료 미납
- 처 분 내 용 : 허가취소
- 처 분 일 자 : 2024. 6. 21.(금)
- 대 상 :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
- 참고사항

가.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,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.

(문의 :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☎ 02)2680-1788)

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

번호	허가번호	호출명칭	시설자명	주소	처분사유	행정처분	법적근거
1	42-2021-10-0000012	1**신*호	유**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	전파사용료 미납	허가취소	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